

大學評價制度的 定着化 課題

魚 允 培

(崇實大 社會事業學科)

1. 序 言

1982년 4월의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이하 英文略字인 KCUE로 표시함) 創設과 더불어 大學의 評價는 制度로서 定着되어 가고 있다. 1984년의 韓國大學教育協議會法 第18條 ①項에서 大學의 評價事業은 KCUE(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의 약자)의 義務事業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 規定에 따르면 “韓國大學教育協議會는 大學教育和 大學行政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資料를 확보하고 週期的으로 大學의 學事 및 運營全般에 관한 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明文化되어 있으며, 同條 ②項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의 결과는 지체없이 文敎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事業目的을 위하여 KCUE는 회원 大學간의 ‘自律的인 協議와 研究·調整을 통하여 相互協力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建議, 정책에 反映케 함으로써 大學의 自主性을 제고하고 公共性을 양양하여 大學教育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음을 KCUE의 定款 第1條에서 밝히고 있다.

오컨대, KCUE에 의한 大學評價事業의 목적은 그 定款에서 명시한 대로 ‘大學의 自主性 提高와 公共性 昂揚’에 기여하는 데 있고 大學 평가 사업은 大學간의 ‘自律的인 協議와 研究 調整’의 方法으로 추진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KCUE는 이상과 같은 목적과 方法으로 설립 이래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는 大學評價事業을 하나의 제도로서 定着시켜야 할 시급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KCUE의 한 研究報告書에서 지적하고 있다.¹⁾ KCUE의 概念이나 組織과 業務 자체도 새롭게 어느 면에서는 未定着인 狀態下에서 이제까지 官主導로 실시해 오던 大學의 평가 事業을 大學간의 自律的 協議機構의 성격을 띤 KCUE에 의하여 그것도 大學間에 ‘自律的인 協議와 研究 調整’의 方法으로 짧은 기간내에 制度化시킨다는 것은 難題가 아닐 수 없다. ‘시작이 半’이라는 견언이 있다. 착수하고자 하는 평가 事業의 개념이 明瞭하고 會員校間에 충분히 그 취지와 목적 및 접근 方法에 대해 意思疏通이 되었고 그 결과가 KCUE와 對象校에 還流(feedback)되어 당초의 목적과 目標達成에 統合될 수 있는 裝置(mechanism)가 잘 짜여져 있다면, 大學 평가 事業을 제도로서 정착시키고자 하

1) 李星鎬·具丙林, 大學評價事業의 制度的 發展方向 研究, 韓國大學教育協議會 研究報告 第 85-1-32(1985. 8), p. 8.

는 KCUE의 노력은 이미 半程度는 達成되었다고 假定해 볼 수 있다. 반면 不分明한 概念, 不充分한 意思疏通, 結果의 受容裝置 未備 등의 상태에서 대학 평가 사업을 出帆시켰다면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할수록 대학 평가 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大學의 自主性 제고와 公共性 양양’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本稿에서는 KCUE 創設 이래 실시한 大學評價事業의 각종 報告書와 研究論文 등에서 지적한 問題點들과 제시한 對策 등을 중심으로 대학 평가 사업의 制度的 定着方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미 상당량의 報告書와 研究論文들이 이 분야의 專門學者들에 의하여 발표되었고 대학 평가 사업의 制度的 定着을 위한 방법 등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그러한 見解들을 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정착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大學評價制度化的 先行要件

制度的 定着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制度化(institutionalization)를 의미한다. 제도화란 제도의 擴散과 受容化를 말한다.

어느 제도든 그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個人이나 集團이 그 제도의 趣旨나 目的에 그들의 行動目標를 順應시키고 承服해야만 한다. 환언하면 그 제도가 개인이나 집단의 順응과 승복의 動機를 誘發해야만 한다. 心理的 次元에서 볼 때 개인이나 집단이 그러한 제도내에서 혹은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目標追求를 최소한 滿足시킬 수 있을 때 또는 그러한 可能性을 예측할 수 있을 때 그 제도를 受容하게 된다. 그 제도의 惠澤이 可視的·直接的·現時的일수록 그 제도의 확산과 정착은 加速化된다는 사실은 많은 實證의 연구

에 의하여 立證되고 있다.²⁾

때문에 大學評價事業이 제도로서 정착되는 것은 대학 평가의 目的이 무엇이나에 달려 있다. 그러한 평가 사업이 KCUE와 같은 機構에 의하여 추진될 때에는 그러한 問題는 더욱 심각하게 제기된다. 美國의 경우에서와 같이 대학들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自發的인 合意에 의하여 스스로를 평가하는 自律的 大學業績評定制度(accreditation system)를 발전시켰을 때에는 평가 자체를 그들 자신의 目的追求로 受容하기 때문에 쉽게 정착이 될 수 있었다.³⁾

英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1919년에 法定機關으로 설립된 大學補助金委員會(UGC: University Grants Committee)에서 대학의 學事, 教授, 圖書館, 運營 등에 대해 全般的인 調査와 評價를 실시한다. 그러한 조사와 평가의 목적은 政府에서 대학에 補助金을 지급해 주는 데 필요한 資料를 얻는 데 있다. 1985~86년 英國 대학들의 收入金 83%는 정부로부터 交付되고 있으며 UGC가 執行하고 있다.⁴⁾ 즉 大學評價의 目的이 뚜렷하다.

이처럼 先進國에서 정착시킨 大學評價制度가 大學教育의 質的 水準의 유지와 개선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제도를 導入해야겠다는 취지와 목적으로 KCUE가 設立되었고, 또 大學評價事業이 推進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先行條件의 充足이 필요하다.

즉, KCUE의 會員校들이 KCUE를 자기 대학 평가를 위한 自律的 機構로 만드는 일이다. 비록 KCUE가 英國의 UGC와 같은 법정 기관으로서 정부의 補助金 支給의 행정 책임을 法的 權限으로 부여받고 있기는 않지만 그에 準하는 혹은 그러한 단계의 前段階로서 KCUE의 位置와 役割을 회원교들의 自主的인 努力으로 구축하는 일이다.

2) Jack Rothman et al, *Promoting Innovation and Change in Organization and Communities*(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6)에서 인용한 각종 문헌을 참고로 할 것.

3) 1986년 10월 22일 KCUE 주최로 개최된 “Problems and Prospects of University Education Evaluation” 세미나에서 발표한 Richard M. Millard(美國 高等教育評定制協議會 會長)氏의 논문, “The American Accrediting System”을 볼 것.

4) 앞에서 언급한 KCUE 세미나에서 발표한 David Harrison(Exeter大學校 副總長)氏의 논문, “University Evaluation in Great Britain,”을 볼 것.

이러한 회원교들의 자주적인 노력을 促進시키기 위해서 KCUE는 대학 평가 사업의 목적과 방법 내지 절차를 명료하게 定立해야 한다. 즉 평가 사업의 定着化戰略과 細部施策을 實效性 있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현재까지의 각종 보고서와 연구 논문들에서 지적한 問題들과 제시한 對策들을 再照明해 보고자 한다.

3. 大學評價의 目的 問題

이미 언급한 대로 대학 평가 사업이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大學評價의 目的이 무엇보다 명료히 規定되고 대학으로 하여금 평가의 惠澤을 豫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急先務다. 그러나 아직 KCUE의 평가 사업이 그런 段階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KCUE의 평가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어느 教授의 말과 같은 “大學評價는 해서 무엇하는가?”⁵⁾라는 질문을 평가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평가를 받는 對象校의 입장에서 제기할 때, KCUE의 입장이 分明치 못한 것 같다.⁶⁾ 이 질문에 대한 解答을 위한 會員校 相互間의 自律的 協議와 研究 및 調整의 과정이 바로 대학 평가 사업을 정착화시키는 基礎가 된다.

비록 KCUE의 대학 평가 사업이 회원교와 共同으로 수행되되, 그 목적이 文敎部의 學事行政에 관련된 政策資料의 수집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불과할지언정⁷⁾ KCUE 設置法에 의하여 ‘週期的으로 大學의 學事 및 運營全般에 관한 評價’(同法 第18條 ②項)를 KCUE에 委任한 이상 그 法的 根據에 따라 KCUE의 대학 평가 사업을 회원교의 自體發展과 대학 상호간의 協力增大의 媒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우선 대학 평가 사업이 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의 對象範圍를 縮小하여 그 평가의 結果

를 평가 대상교들이 자체 노력으로 受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의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서 해당교의 全般的인 學事改革이나 방대한 資金을 소요하는 施設擴充을 필요로 한다면 그 평가는 아무리 客觀的인 立場에서 科學的인 方法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KCUE의 평가가 財政支援과 연결될 수 있다면 KCUE의 평가 사업은 즉각적으로 큰 呼應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각종 평가 사업은 大學教育의 水準向上에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⁸⁾ 그러한 目標으로 KCUE의 평가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KCUE의 中극적인 組織目標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을 현 시점에서 KCUE에 法的으로 부여했다고 假定했을 때 과연 KCUE의 평가 결과에 회원교들이 承服하고 그것을 受容할 수 있겠는가라는 質問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평가의 결과로 財政的 支援에서 不利한 評定을 받게 되었을 때나 本意 아니게 大學間의 等級化가 이루어져 그 序列의 뒤바뀜이 일어날 때 야기되는 混亂 등은 수없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오히려 大學의 평가 사업이 대학간의 不協和音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반면, 대학 평가의 결과가 해당 대학의 脆弱한 부분을 改善하고 強點을 補強해 주는 支援의 根據로 활용된다면 대학들이 自願해서 KCUE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도 예견할 수 있다.

이상의 어느 경우든지 평가는 해당교의 利害와 직결된다. 財政支援과 같은 外部的 報償可能性을 배제한 여타의 분야에서 대학 평가 사업이 회원교에 惠澤을 줄 수 있는 분야를 KCUE를 中心으로 회원교들이 地域別로, 專門學問分野別로, 혹은 大學運營의 측면에서 相互協議下에 모색하던 自律的으로 평가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領域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共通分母 위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對象의 範圍와 평가의 基準을 상호 협의하에 설정

5) KCUE, 大學評價의 發展方向 摸索을 위한 세미나, 資料84-5-13(1984.12.18)에 실린 康宇哲, “現行 大學 評價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p. 40.

6) 李星鎬, 具丙林, 前掲書, p. 31.

7) 康宇哲, 前掲書, p. 38.

8) KCUE에서 개최한 前記세미나에서 발표한 李寬(蔚山大 總長)의 論文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in Korea,” p. 22.

해 간다면 그 部門에 관한 한 평가의 결과에 의한 自律的 調整이나 規制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1985년부터는 ‘과거의 機關評價 中心體制에서 점진적으로 學科別 評價體制로 전환하도록 集中的인 研究’⁹⁾를 KCUE가 추진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평가의 대상을 學科別로 縮小하고 평가 내용을 학과별 교수·학습 활동, 연구 활동, 실습, 학생의 사회 봉사 활동, 교재, 학습 평가 도구의 有用性 등으로 결정하고 평가의 기준을 국내의 學界의 動向과 先進外國의 同種 學科에서의 實例를 기초로 해서 설정하고 평가는 타대학의 同僚教授, 그 분야의 專門家, KCUE의 專門委員 등으로 구성된 評價協議會에서 실시한다면 현재와 같은 ‘全面改革構想을 통한 劃一的’인 大學評價事業보다는 훨씬 더 대학 평가 사업의 本來意味를 살리고 각 대학의 ‘自律的인 自發的 參與’¹⁰⁾를 촉진시킬 契機를 마련해 주지 않겠나 생각된다.

학과별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地域別로 혹은 設立背景이나 規模 등의 類似性 등을 감안하여 小規模의 評價協議會를 구성케 한다면 전국적인 학과별 평가보다 더 ‘自律的인 自發的 參與’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相互 補完補強하면서 專攻分野의 학문적 발전과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水準向上을 도모함으로써 평가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평가의 대상이나 내용을 制限된 範圍에서 출발하여 차츰 인접 학문 분야나 大學運營의 측면에 漸進的으로 擴大해 가는 접근 방법을 택한다면 KCUE에서 주관하는 機關別 綜合評價에도 대학의 自發的 參與의 정도가 強化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下位協議機構들에 의한 대학 평가 사업이 약 5년 정도에 걸쳐 시도

적으로 시행된 다음에는 현행처럼 全體 大學 모두에 대하여 거의 義務的으로 실시되는 듯한 구속적 평가에서 탈피하고 評價事業을 評價 및 認定事業으로 전환시키기가 좋을 것이다’¹¹⁾라는提議는 매우 타당하다.

대학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大學教育의 質的 水準의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目標를 제시해주는 데 있기 때문에¹²⁾ 대학교육의 어느 한 部門에서라도 평가의 결과에 따라 現狀水準을 유지하든지 혹은 改善을 하는데 自律的인 努力을 하게 된다면 그 波及效果는 결코 적지 않다고 본다.

KCUE와 같이 法定機關이면서 평가의 결과를 強制로 受容시킬 수 있는 權限이 없는 機構에 의하여 평가 사업을 정착시키고자 하면, 이상과 같이 部分的으로 시행하면서 參加校들이 그 결과를 自發的으로 受容해 가는 接近方法이 평가 사업을 정착시키는 데 매우 適宜하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대학 평가가 限定된 分野에서 具體的인 目標를 가지고 실시되지 않고, 시행될 수 없는 全面的 改革을 전제로 한 機關別 綜合評價를 KCUE의 회원교 전체에게 一律的으로 제한된 시일내에 실시했기 때문에 KCUE에 의한 大學評價事業이 制度로서 정착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겠다.

즉, 평가의 목적이 대학의 學事行政이나 大學運營 全般에 걸쳐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평가의 結果를 당해 대학에서 受容할 수 없을 뿐더러 타대학에도 波及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언급한 대로 막대한 財政投入 없이는 不可能한 전면적 개혁을 목표로 하는 평가 사업은 實效性이 없다. 때문에 KCUE의 평가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會員校 相互間 큰 부담없이 평가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평가의 對象이나 目標를 限定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 사업을 實效性 있게 추진하고 회원교간에 定着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의 方法이나 節

9) KCUE, 1986年度 大學評價計劃書(1986.2), 머리말.

10) 李星鎬·具丙林, 前揭書, pp. 32~33.

11) 上揭書, pp. 35~36.

12) 劉仁鍾, “大學業績評定制도의 國際的 動向과 韓國 大學評價制度的 方向”, KCUE, 資料 84-5-13(1984.12.18), p. 4.

次の 문제도 再考를 요한다.

4. 評價事業 推進의 方法 問題

KCUE의 定款에서 명시하듯 평가 사업의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어서도 회원교간의 '自律的인 協議와 研究 調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CUE의 設置法規定에 따라 KCUE는 週期的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걸쳐 評價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文敎部長官에게 報告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사업을 해야만 한다면 評價制度의 自律的 定着은 기대하기 어렵다. KCUE 자체를 자율적인 協議機構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定着(institutionalization)시키고자 한다면 KCUE의 主力事業의 하나인 대학 평가 사업의 推進方法은 정관에서 명시한 대로 대학간의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 및 조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현재까지 KCUE에 의한 평가 사업은 自體分析研究形式의 書面報告에 의거한 평가와 現地訪問評價의 방식을 병용하고 있다.

문제는 평가의 목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KCUE에서 채택하고 있는 서면 보고와 현지 방문의 實效性 與否에 있다. 評價方法의 형식이나 절차는 평가 자체의 목적 못지 않게 評價制度의 定着化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가의 目標設定過程에 있어서 회원교들의 自律的·自發的 參與가 중요하듯 평가를 진행하는 過程에서 자율적·자발적 참여는 더욱 중요하다. KCUE에서 요청한 '大學(校)自體分析 研究報告書' 書式을 작성하는 과정이나 KCUE에서 파견한 평가 위원들의 現地訪問評價 과정중에 해당 대학에서 어떤 態度나 姿勢로 임하느냐는 어떤 점에서는 평가의 目標設定段階時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서면 보고서 작성시든지 현지 방문 평가에 임하는 경우든지 形式的으로 보고하리니까 報告書를 해당 補職教授와 事務職員 몇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든가, 現地訪問評價委員들이 방문한다니까 관련 보직 교수나 사무 직원이 質問

에 답을 하거나 요청하는 資料를 提供하면 소위 '評價'가 終了된 것으로 KCUE의 大學評價事業을 받아들인다면, 大學敎育의 質的 水準向上이나 대학의 自主性 및 公共性의 提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 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에는 요원하다.

한편 KCUE의 입장에서 볼 때 評價事業은 法定義務事業이므로 週期的으로 평가 사업을 해야겠고 평가의 결과는 지체없이 文敎部長官에게 보고하라는 法的 義務가 있으므로 可及的 빠른 시일내에 評價報告書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나면 '評價業務'는 일단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평가 사업의 제도적 정착화가 自律的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¹³⁾

때문에,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 前節에서 논의한 대로 평가의 과정중에서도 參加校들의 惠澤을 얻을 수 있도록 면밀한 事前準備가 요청된다. 목표 설정의 경우에서와 같이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도 評價對象校의 教授 및 職員代表들이 評價委員, KCUE의 專門委員들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평가 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들을 협의·연구·조정하는 事前段階가 先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大學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는 '自體分析研究報告書' 문항들도 再檢討를 요한다. 즉 문항들의 目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학의 학사 행정이나 운영 전반에 걸친 實態 파악에 목적이 있다면 실태 파악은 왜 해야 하는지 혹은 그러한 문항들을 가지고 타대학과 比較하는 데 필요한 情報를 입수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지 등 문항들의 목적이나 필요성의 確認이 필요하다. 前節에서 언급한 대로 막대한 재정 투입 없이는 수용할 수 없는 評價結果를 導出하기 위한 問項들은 再考를 요한다. 평가의 대상과 목표를 特定한 학과나 분야에 限定시켜 평가를 받는 大學(校)들로 하여금 그 평가의 결과를 自進하여 수용하고 자율적으로 試行토록 평가 사업을 再定立하는 것이 評價制度의 定着化에 더 實效가 있다면 그에 걸맞게 '自體分析研

13) 康宇哲, 前掲書, p. 40.

究報告書'의 문항들도 調整해야 할 것이다.

평가의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하여 看過해서는 안 될 要件이 있다. 즉, 全校의인 參與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當該校의 總·學長이나 私立大인 경우에는 財團理事會에서부터 KCUE에서 실시하는 평가 사업의 목적과 그 중요성을 충분히 認識하고 평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처럼 KCUE에 제출하는 報告書에 決裁捺印하는 것으로 혹은 現地訪問評價委員들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간 뒤 보고를 받는 정도로 大學行政責任자들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한 평가를 全校의인 自體發展의 契機로 정착시킬 수 없다.

평가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終結의 全過程에 걸쳐 대학의 행정 책임자가 自己大學(校)의 평가를 위한 自體分析 研究에 직접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自體改革의 突破口를 마련하겠다는 決意를 표명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평가 사업도 形式的인 要式行爲로 끝날 확률이 압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自體評價를 위한 分析과 研究過程에서 현재와 같이 보직 교수나 사무 직원의 手中에서 報告書가 완성·제출되고 당해 연도의 평가 사업을 끝내는 形式化를 防止하는 것이 全面的인 改革을 목표로 하는 평가이든, 學科別 單位의 평가이든 그 평가 자체를 정착시키는 데 基本的인 要件이 된다. 內的인 評價 自體의 정착 없이 外部에 의한 평가를 自律的으로 受容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학 자체내에서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평가의 대상이나 목표가 限定的이고, 해당 학과나 분야의 교수나 직원 혹은 학생들의 關心度가 높은 사항에 관하여 평가 작업을 集中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대로 평가의 과정이나 결과가 자기들의 학과나 해당 부서의 利益 또는 惠澤과 直接的으로 관련될 때에 높은 自發的인 參與도를 기대할 수 있다.

評價의 方法이나 節次에 관련된 이상의 몇 가지 점만이라도 實效性 있는 방향으로 改善해 간다면 여타의 방법이나 절차, 문제점들에 대한 解決의 실마리도 쉽게 찾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5. 맺는 말

大學의 評價事業은 그 目的이 누누이 언급한 대로 대학교육의 質的 水準의 向上과 대학의 自主性 및 公共性의 提高에 기여하는 데 있기 때문에 制度로서 定着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社會經濟構造를 高度技術情報社會으로 발전시켜 가야 할 國家的 目標達成에 있어서 대학이 담당해야 할 役割을 特定한 基準에 의하여 週期的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改善策을 모색한다는 것은 國家的 次元에서 요청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KCUE에 의한 대학의 평가 사업이 선진국에서와 같이 自生的으로 혹은 정부의 補助金支給을 위한 法定事業으로 정착되고 발전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하에서 自律的인 制度로서의 대학 평가 사업의 定着을 즉각적으로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물론 현재 文敎部가 관장하고 있는 대학의 新規設置許可, 종합대학으로의 昇格, 增員, 增科 등 大學行政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基本的인 情報나 根據資料를 KCUE의 대학 평가 사업의 결과에 의존하도록 法的인 根據를 KCUE에 부여한다면 현재의 대학 평가 사업을 조속히 제도로서 定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대로 그렇게 정착이 되더라도 大學間의 均衡적 발전이나 質的인 改善에 즉각 반영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갖가지 副作用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아무런 負적인 평가 없이도 大學別 自體의 評價에 의하여 작성된 自體發展計劃에 정부가 行·財政의 支援만 해준다면, 현재의 水準보다는 훨씬 質 높은 敎育을 실시할 수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러한 假定보다는 현실의 여건하에서 KCUE에 의한 大學評價事業을 大學間의 自律的인 協議와 研究 및 調整의 方法으로써 定着化를 모색하고 그 방향으로 實施해 간다면 그 과정에서 KCUE에 의한 평가 사업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漸增受容하는 發展的인 變化를 하지 않겠다 생각된다.

그러한 漸增的인 受容過程에서 評價의 基準도 점진적으로 大學敎育의 水準을 질적으로 社會·經

濟的 要請에 걸맞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上向 調整할 수 있을 것이고, 평가 작업을 客觀的으로 適實性 있게 수행할 수 있는 評價專門家의 양성과 확보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KCUE의 평가 작업은 制度的 基盤을 구축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美國의 大學業績 評定制度나 英國의 大學補助金委員會制度와 같

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KCUE의 自律的 位置가 대학 사회에 의하여 認定되리라고 본다. 한편 그러한 방향으로 KCUE의 평가 작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政府가 KCUE의 機能을 漸增的으로 強化해 간다면 그 만큼 KCUE에 의한 自律的 評價制度의 定着化도 加速化될 것이다. *

〈教育箴言〉

군자는 아둔한 사람이 배움에 이르기가 어렵고, 이에 비해 총명한 사람은 배움에 이르기가 쉽다는 점을 인식하여, 배우는 사람의 자질이 뛰어난지 아니면 열등한지를 안 후에야, 그들을 잘 깨우쳐 줄 수 있다. 그들을 잘 깨우쳐 줄 수 있는 다음에야 스승이 될 수 있다. 스승이 될 수 있는 다음에야 일개 관청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으며, 관청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다음에야 일국의 임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승이라는 것은 배움으로써 임금이 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스승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君子知至學之難易而知其美惡然後 能博喻 能博喻然後 能爲師 能爲師然後 能爲長 能爲長然後 能爲君 故師者也所以學爲君也 是故擇師 不可不慎也。”

〈禮記, 學記篇〉